

제2646호
2019. 4. 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9-239호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2
 제2019-243호 : 장애인아동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제2019-25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9-25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19-257호 :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
 제2019-258호 :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
 릿>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39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전	후
수질 제7호	삼부토건 (주)	이응근, 이용재	퇴계로 63 (남창동)	대표자	이응근, 이용재	이응근
수질 제13호	자이오엔엠 주식회사	박승범	남대문로9길 40, 5층 (다동, 센터플레이스빌딩)	상호	자이오엔엠 주식회사	자이에너지 운영(주)

가.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8. 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43호

배재어린이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년 도시공원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2. 사업명 : 배재어린이공원 CCTV 설치

3.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4. 사업내용 : 공원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5. 설치장소

연번	주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31	배재어린이공원 내	CCTV (1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배재어린이공원 시설내 24시간 촬영

7. 공고기간 : 2019. 4. 1 ~ 2019. 4. 21 (20일간)

8. 공고방법 : 중구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게시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 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9년 4월 21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0.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창경궁로17 (예관동) 공원녹지과
중구청 공원녹지과(공원담당)
- 전 화 : 02)3396-5855
- 팩 스 : 02)3396-8797

11.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담당자 박희태 ☎02-3396-58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서

사업명	배재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행정예고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배재어린이공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55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문구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국·시비+구비)			(국·시비+구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급	150만원 (100+50)	100만원	⇒	심한 장애 (1~3급)	150만원 (100+50)	
2급	150만원 (100+50)	100만원				
3급	100만원	100만원				
4급	100만원	70만원 (70)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100만원	100만원 (100)
5급	100만원	-				
6급	100만원	-				

※ 1~6급인 여성장애인, 1~3급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100만원 지원(국·시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한 장애 : 150만원
-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주민센터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u> ----- ----- ----- -----.</p>
<p>제4조(지원액)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u></p>	<p>제4조(지원액) ①----- ----- ----- -----. -----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 ----- -----.</p>
<p>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다. 장애등급 5~6급 : 70만원</p>	<p>1. 심한 장애 : 150만원</p>
<p>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70만원</p>	<p>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p>
<p>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절차) ①각 주민센터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원절차) ①동장----- ----- -----.</p>
<p>1.·2. (생 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56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휠체어(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득별 연 최대 10~20만원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현 행	⇒	개 정
<p>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비의 전액 지원 - 연 20만원 이내 <p>일반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비의 50% 지원 - 연 10만원 이내 		<p>등록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비의 전액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장애인으로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 애 정 도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동명 08-0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유형			장 애 정 도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하당 유형에 체크						
비고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 동 주민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수리업체장) 귀하</p>						

※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신당 5동은 신5(두자만)로 표기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유형	연락처	보장구유형	수리내역	수리비	신청금액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 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p> <p>①(생 략)</p> <p>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p>	<p>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p>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p> <p>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p> <p>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p> <p>②.~④.(생 략)</p>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p> <p>②.~④.(현행과 같음)</p>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 애 정 도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동명 08-0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 급 유 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p>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p> <p>(○ ○ 수리업체장) 귀하</p>				
*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신당 3동은 신3(두자만)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동명 08-0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p>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p> <p>(○ ○ 수리업체장) 귀하</p>			
*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신당 5동은 신5(두자만)로 표기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5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9.7.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6급)이 명시된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6급 - 등급외 -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 장애인 - 장애미해당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 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input type="checkbox"/>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p> <input type="checkbox"/> 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 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p>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접수번호	제 호					
<p>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p>						
<p>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p>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p> <p>-----.</p> <p>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p> <p>2.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자의 의무)</p> <p>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자의 의무)</p> <p>① -----</p> <p>-----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식음료용 자동판매기</p> <p style="text-align: center;">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성 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0%;">전화번호</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주 소</td> <td></td> <td>세대원수</td> <td>(신청인 포함)</td> </tr> <tr> <td>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td> <td>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td> </tr> <tr> <td>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td> <td> <input type="checkbox"/>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수급자가 아님 </td> <td>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td> <td></td> </tr> </table>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input type="checkbox"/>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식음료용 자동판매기</p> <p>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접수번호</td> <td style="width: 70%;">제 호</td> </tr> </table> <p>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p> <p>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p> </div>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접수번호	제 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식음료용 자동판매기</p> <p style="text-align: center;">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성 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0%;">전화번호</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주 소</td> <td></td> <td>세대원수</td> <td>(신청인 포함)</td> </tr> <tr> <td>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td> <td>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td> </tr> <tr> <td>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td> <td> <input type="checkbox"/>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수급자가 아님 </td> <td>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td> <td></td> </tr> </table>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input type="checkbox"/>신문·복권판매대 <input type="checkbox"/>매점(10㎡이하) <input type="checkbox"/>식음료용 자동판매기</p> <p>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접수번호</td> <td style="width: 70%;">제 호</td> </tr> </table> <p>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p> <p>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p> </div>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접수번호	제 호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 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 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p>※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p>※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p>「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 4.(생략) 	<p>「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현행과 같음) 3.-----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생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5.(생략) ④·⑤(생략)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1.(현행과 같음) 2.----- -- <u>심한 장애</u>----- ----- -- 3.~5.(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생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5.(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의 감면) ----- ----- ----- ----- ----- 1.(현행과 같음) 2. ----- -- <u>심한 장애</u>----- ----- - 3.~5.(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① ----- ----- ----- ----- 장애 정도----- ----- ----- ----- ②(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58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9.7.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6급)이 명시된 우리 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6급 - 등급외 -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 장애인 - 장애미해당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원활할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3.(생략)</p> <p>4. 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말한다</p> <p>5.(생략)</p>	<p>「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 ----- ----- ----- -----</p> <p>1.~3.(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p> <p>5.(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p>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p>